

한방 칼럼

탈모 이야기 3 탈모와 기/혈/진액, 정



1) 탈모와 기

기는 강력한 추동 작용으로 장부와 조직 기관의 생리 활동을 관장하며, 진액과 혈을 수송하는 추동 기능이 있는데 기체/기허 증상이 발생하면 상기 작용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는 방어 작용과 고섭 작용이 있는데 <탈락성 모발 질환>의 경우는 기의 방어 작용 및 고섭 작용 감퇴와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탈모와 혈

모발은 혈지여(髮者血之餘), 영혈이 부족하면 모발이 생성 및 자윤 작용이 떨어지므로, 모발이 거칠고 윤기가 없게 된다.

혈의 생성은 비위의 수곡정미에서 기원하므로 장기간의 음식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장기간 비위의 기능이 실조되면 영혈의 생성이 부족하므로 <모발 약화 및 모발 끊어짐, 모발 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사려 과다 등도 영혈을 손상시키는데, 이는 혈체 및 耗血을 시키는 병리기전으로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모발 약화 및 모발 끊어짐, 거친 모발>을 주소로 내원했을 경우 영양 섭취

부족 및 비위 기능 실조인지, 스트레스나 사려 과다인지, 아니면 복합성인지 변증을 잘 해야 한다.

참고로 혈허와 함께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는 모발이 마르면서, 피부가 건조/건습해지고, 어지럽고 팔다리가 저리는 등의 제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3) 탈모와 진액/정

진액은 정으로 화(化)할 수 있으며, 정 부족은 진액 부족을 동반한다. 모발의 약화는 신허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진액이 부족하면 점액 분비의 부족으로 머리에 인설 및 각질화가 잘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이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진액은 각 장부 조직기관을 자윤하며, 골수/척수/뇌수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관절을 윤활하게 하므로, 진액이 부족하면 탈모와 함께 제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아류베델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학생, 직업훈련학교 학생, 연수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 산정 지침

지난 8월 9일 이민국은 연수비자 (J-1), 직업훈련학생비자 (M), 학생비자 (F-1) 체류자들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을 위한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다음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허가서 (I-94)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I-94의 체류 기간은 유효하지만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 (unauthorized employment)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 (unlawful status)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다른 이민/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 (adjustment of status/change of status) 등 신청이 거부되었고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면 그 거부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지난 8월9일부터 F-1, M-1, J-1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F-1, M-1, J-1 유학생, 직업학교학생, 연수생들은 I-94 출입국 카드에 체류 만료 날짜 대신 Duration of Status(D/S)라는 표시가 되어 만료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거나 이민관사가 체류신분 위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분은 없어졌지만 재입국금지 규정 불법체류일자에 산정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류허가증인 I-94에 Duration of Status(D/S)를 받으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라도 재입국금지 기간에 누적되지 않아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F-1,

M-1, J-1 유학생, 직업학교 학생, 연수생들도 체류신분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 받아 180일을 넘길 경우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진행에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이 학교수업을 끝마쳤거나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승인 받은 업무를 종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으로 불법체류한 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 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 사면을 신청해서 허가 받을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단 재입국금지법이 적용되면 영주권을 받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나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미국 내 체류신분이 F-1, M-1, J-1 유학생과 연수생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8월9일부터 새로운 방침대로 시행되면 불법신분으로 180일이 넘는다면 재입국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위의 사실에 유념해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출석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 시에 꼭 학교에 등록을 유지해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포함)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하시마 건축

HASHIMA CONSTRUCTION INC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Terry Joe (Mr. 조) 714.745.5958